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84
----------	-------

발의연월일 : 2024. 2. 2.

발 의 자 : 변재일·강준현·윤후덕
임호선·민형배·윤영찬
전용기·인재근·조정식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의 체계와 내용이 미흡한 수준임.

또한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민간공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군 복합공항인 경우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민·군 복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구역은 같은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 간 상대적 박탈감 및 갈등 조장의 우려가 있음.

또한 국방부에서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전투기 추가도입, 훈련계획 변경 등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민들이 국방부에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동일 생활권 내 모든 주민이 동일한 소음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계지 기준을 조정하고, 5년 이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대표 등이 국방부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각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도시지역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 이내라도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방지법’이 정한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군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소음영향도”를 “소음영향도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제5조제4항 중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 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손실보상
6.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

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주민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교육문화사업 등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양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u>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u>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 ----- ----- ----- <u>-----소음영향도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u> ----- ----- ----- ----- ----- ----- -----.
<신 설>	1. 도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신 설>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② ~ ③ (생략)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④ -----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

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

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

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손실보상

6.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

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소음대

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

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신 설>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
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
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
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주민지원 등) ① 국방부
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들에 대한 교육문화사업 등 지
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지원시책의 구체적
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① -----

-----.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u> (생 략) ② ~ ④ (생 략)	<u>5.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u>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